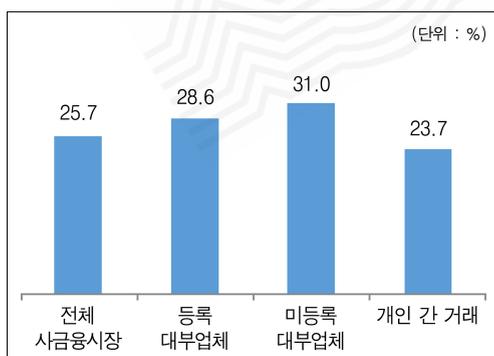


## 요약

피해예방부터 단속·수사, 처벌까지  
종합대책 수립해 불법사금융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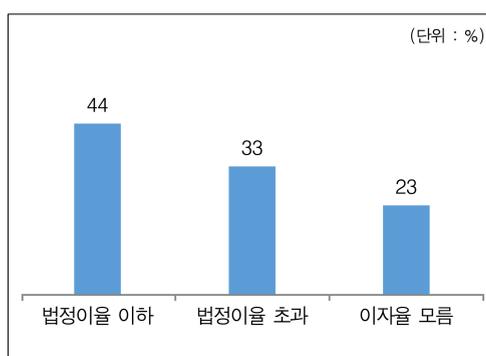
## 대부업체 이용자 28% “미등록 업체 이용”... 23% “대출금리도 몰라”

대부업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금융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2~2014년 대부업 이용자의 약 28%가 미등록 업체를 이용해왔으며, 이들은 33%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금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등록 업체 이용자의 23%는 자신의 대출금리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여, 이용자들 상당수가 금리에 무신경하거나 업체들이 실질금리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문제점은 ‘고금리’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연체자 비율은 31.0%로 사금융 시장 전체 평균(25.7%)이나 등록 대부업체(28.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용액은 2,140만 원으로 등록 대부업체 790만 원의 3배에 달한다.



출처 : 금융감독원(2013)

[그림 1] 사금융 이용자 중 연체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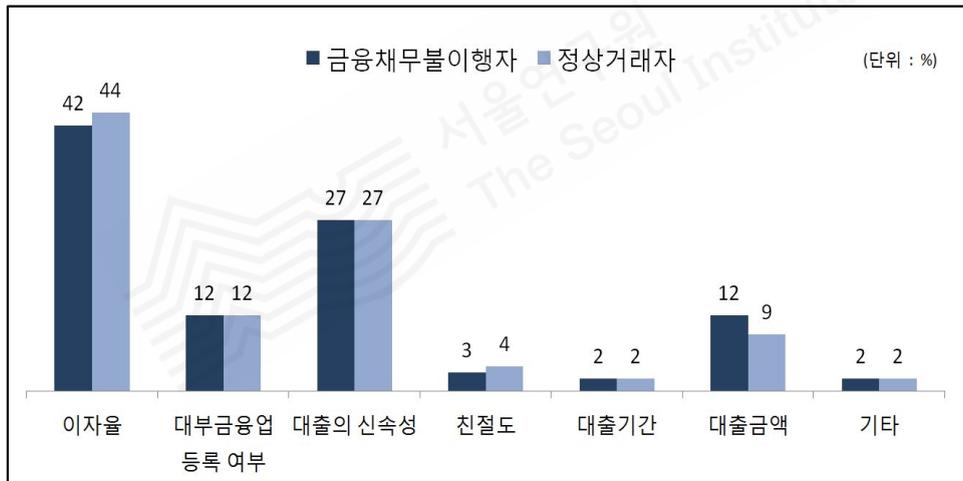


출처 : 한국대부금융협회(2014)

[그림 2] 미등록 업체 이용자의 월평균 금리

## 사금융 이용자, 금융사 선택 우선기준은 이자율·대출신속성 순서

사금융 이용자들이 금융사 선택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이자율’과 ‘대출의 신속성’ 이었고, 그다음으로 ‘대출 금액’과 ‘금융사의 등록 여부’였다(대부금융협회, 2014). 대부업 이용자의 상당수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신속성이나 대출금액을 고려하는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반면, 대부업체들의 등록 여부를 고려하는 비율은 12%에 그쳐, 대부업 이용자들이 불법 운영되는 무등록 업체에 대한 인식보다 개인들의 대출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부이용 행태는 대부 이용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체계에서 벗어난 업체들로부터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하므로, 시민들이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인식하고 확인하도록 교육·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대부금융협회(2014)

[그림 3] 대부금융사 선택기준(거래상태 구분)

## 대부계약 체결 시 겪는 부당사례는 불법 고금리 대출이 가장 많아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부당사례로는 수수료나 선이자 등을 포함한 실질이자율이 법정금리를 초과한 ‘불법 고금리 대출’이 10%로 가장 많았다(대부금융협회, 2014). 또한 채무자 이외 연대보증인이 아닌 지인(주로 가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 미교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미등록 업체뿐 아니라 등록 업체 이용자들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상당수는 채무와 무관한 지인들의 연락처 기재를 요구(8%)받거나, 고금리 대출(7%)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과거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4년 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계약 체결뿐 아니라, 추심과정에서도 채권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비율은 미등록 업체 이용자들이 24%, 등록 업체 이용자들이 14%로 조사되어, 등록 업체 이용자들보다 미등록 업체 이용자들이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부계약 체결 시 불법·부당사례 경험

불법 고금리 대출	계약서 허위기재 및 미교부	채무자 외 연락처 등 기재	중개수수료 수취, 요구	미등록 대부금융사 대부광고	기타	없음
10%	5%	6%	6%	3%	3%	67%

출처 : 한국대부금융협회(2014)

## 일수대출은 실질이자율 200%에 달하고 재대출로 추가 부채 발생

무등록 대부업체들 대부분은 고금리 대출을 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수’(日收) 대출에서 이자율 위반이 많이 발견된다.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수 광고지에는 ‘짠 일수, 금리 월 2%’라는 문구로 현혹하고, 채무계약서상에도 금리를 연 20~24%로 기재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이자계산식에 따르면 실질이자율은 200%에 달한다. 이처럼 계약서상의 금리와 실질금리가 다른 이유는 일수의 운영구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일수대출의 이자율 계산은 정률법에 따르고, 채무자가 매일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수대출의 주요 사용자인 도매상인 또는 시장상인들은 복잡한 정률 이자계산 법으로 실질금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일수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출 시에 수수료와 당일치 일수금액을 제외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어, 채무자가 실제 받는 대출 금액은 명목상 대출금보다 적다. 이 연구에서 현행 일수대출 운영구조를 토대로 실질금리를 계산해본 결과, 실질이자율은 약 180%에 달하여 대부업 최고 이자율 34.9%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2]** 일수대출 운영구조에 의한 실질금리 계산

- 10,000,000원을 일수대출 받고 100일간 변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율 20%를 적용하면 채무자가 변제할 총 금액은 12,000,000원임
- 수수료 5%(50만 원)와 선일수 120,000원
- 99일 동안 120,000원을 매일 균등상환(100회 중 선일수 1회를 제외하고 99회 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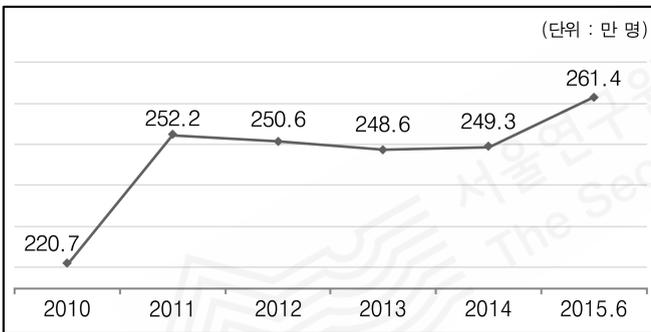
$$9,380,000 = \sum_{n=1}^{99} \frac{120,000}{(1+r/365)^n} \Rightarrow \text{실질이자율} : 180.1\%$$

일수대출로 인한 채무자들의 피해는 고금리뿐 아니라, 재대출(일명 ‘껌’)로 인해 추가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가 연체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재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전 대출분의 미상환잔액을 일시 상환 받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꺾기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채무자는 추후 분쟁발생 시에 자신의 채무금액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 일수대출을 사용한 상인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탈적 행위’로서,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이 연구에서는 일수 채무자들이 실질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액대출에 한하여 이자계산을 정액법으로 인정하는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주수(週收)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61만 명, 불법사금융 이용자 약 102만 명

금융위원회의 2015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 대부업체의 거래자 수는 261.4만 명으로 과거 3년간 증가 추세이다. 한편,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 행위를 하는 불법사금융업체 들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그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방법이다. 대부금융협회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72%(2,215명)가 등록 업체를 이용하고 나머지 28%(213명)는 미등록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 및 미등록 업체 이용비율을 72:28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비율을 현재 파악된 등록 업체 거래자 수 261.4만 명에 대입시켜 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약 101.7만 명으로 추정된다.



**[표 3]** 신용등급별 인원분포

신용등급	인원분포(명) '15.9월 기준
1~8등급	42,052,214
9~10등급	1,882,782
전체	43,934,996

출처 : 금융위원회(2015)

**[그림 4]** 등록 대부업체 거래자 수 추이

또 다른 추정방법은 더 큰 틀에서 신용등급과 금융부채를 고려한 거시적 추정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등록 대부업체나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추정하면,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해당하는 약 188만 명이 잠재적 이용자이다. 그 중 실제 대부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추정하자면, 대부이용이 많은 소득분위 1~4등급의 금융부채 보유율은 한국은행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56%이다. 따라서 저신용자 188만 명 중 약 56%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부채는 주로 불법사금융이라 간주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약 10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불법사금융 성행이유는 대출신속성, 상환편의성, 솜방망이처벌 때문

---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고금리, 불법추심 등과 같은 부당한 피해를 겪음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를 이 연구에서는 공급자요인, 수요자요인, 법집행요인으로 구분하여 밝혔다.

먼저, 공급자요인으로는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들의 엄격한 대출조건을 들 수 있다. NICE 신용평가에 따르면 중대형 등록 대부업체 90곳의 2014년 대출승인율은 23.9%에 그치고 있다. 대부 이용자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7.22로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업체 이용자 중 타 금융권에 대출상담을 받았다가 저신용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이 35%에 이른다(대부금융협회, 2014). 수요자요인은 사금융이 은행보다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며, 일수와 같은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주시 전통시장 상인 조사 결과, 상인들은 사금융(혹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고금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대출의 신속성, 상환의 편의성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공급요인 이외에도 불법사금융이 성행하는 것은 정부의 미온적 대책 때문이다. 추정된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100만 명에 달하지만, 2014년 경찰청 통계에 집계된 불법대부업 검거건수는 1,259건이며, 대부업법 위반자들의 재범률은 2011년 이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의 형사처벌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4년 대부업법 위반에 관한 처리건 946건 중 징역형은 47건(5%)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426건, 45%)이나 집행유예(273건, 28.9%)가 선고되었다. 이처럼 소극적인 수사와 적발, 미온적인 처벌은 불법사금융이 우리사회에 계속해서 만연하고 있는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 불법사금융 근절하려면 관련 규정 정비, 처벌 강화 병행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무등록영업, 이자율은 제외)하고 있어, 대부업 관련 모든 불법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 일본의 경우, 이자율 관련 규정인 출자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유기징역을 선고하였

으며, 벌금형이 부과된 것은 많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매우 비교된다.

**[표 4]** 일본의 출자법 위반 판결현황(1심)

연도	처리건수	유기징역	벌금
2008	317	313	4
2009	241	237	4
2010	245	243	2
2011	161	158	3
2012	145	142	3
2013	72	69	3
2014	64	59	5

출처 : 일본사법체계

**[표 5]** 우리나라의 대부업법 위반 판결현황(1심)

연도	처리건수	징역형	벌금형
2008	707	17	398
2009	2,671	42	1,744
2010	1,774	37	964
2011	940	19	541
2012	1,864	46	983
2013	1,267	45	725
2014	946	47	426

출처 : 사법연감 통계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나 부당이득에 따라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 전문가 활용 원스톱센터 설치로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대부금융협회 등으로 나누어진 보호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센터를 설치하여, 피해내역들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조언, 고소장 작성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무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홍보해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들도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관련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상의 피해방지, 피해자보호, 단속·수사, 처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통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절할 수 있다.

## 불법사금융업자 부당이득 몰수하고 악용된 계좌 동결조치 취해야

불법사금융 단속과 처벌에 있어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이나 변제액,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불법대부업체들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벌금부과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불법사금융업체들이 실제 영업을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운영상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개인은 최대 30만 달러와 4년 이하 징역을, 법인은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과 4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법원은 60건의 불법대출을 한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하여 징역 4년과 600,000싱가포르달러(약 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현재 한국의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은 5천만 원 이하, 이자율 위반의 경우 3천만 원 이하로,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처벌수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벌금부과 수준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실제로 얻는 이익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영업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법규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별표”에 의하면 대부업법상 이자율 위반으로 발생된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대부업법에서 범죄수익 몰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해당 법규의 적용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자산을 동결하거나 추후 부당이득을 특정하여 몰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자율 위반으로 인한 것 뿐 아니라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제도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